

# 국 가 인 권 위 원 회

## 차별시정위원회

### 결 정

사 건 15진정0735500·15진정0785500·15진정0914600·15진정0914700·15진정0914800(병합) 보건소장 임용 차별

- 진 정 인
1. 박○○
  2. 주○○
  3. 김○○ 외 1,101명
  4. 권○○ 외 234명
  5. 노○○ 외 508명

피진정인 보건복지부장관

### 주 문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의사 면허가 있는 사람을 의사가 아닌 보건 관련 전문인력에 비하여 우선적으로 보건소장에 임용하도록 한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을 개정할 것을 권고한다.

### 이 유

#### 1. 진정 요지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은 의사 면허가 있는 사람을 우선적으

로 보건소장에 임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의사 면허가 없는 의료인(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사)과 보건의료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에 대한 차별이다.

#### 2. 당사자의 주장 및 관계인의 진술 요지

가. 진정인1, 2

진정인1, 2는 각각 대한○○협회, 대한△△협회 소속이다. 「보건의료기본법」은 “보건의료인”에 대해 보건의료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격·면허 등을 취득하거나 보건의료서비스에 종사하는 것이 허용된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여, 면허를 가진 의료인(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사) 간에 차별을 두지 않는다.

지방의료원의 경우도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방의료원장을 “지방의료원의 운영에 관한 전문적 식견과 능력이 있는 사람 중에서 임명”하도록 명시하여 의사 면허가 있는 사람만을 원장으로 임명하도록 하지 않는다.

그러나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은 의사 면허가 있는 사람을 우선적으로 보건소장에 임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보건소에는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사 등의 전문인력이 배치되어 의료활동을 하고 있고, 보건소장은 보건소의 업무 관장과 소속 직원에 대한 지휘·감독이 주 업무이므로 의사 면허가 있는 사람을 우선적으로 임용할 이유가 없다.

나. 진정인3, 4, 5

진정인3, 4, 5는 각각 ○○남도·○○광역시·△△광역시 소속 공무원이다.

보건소의 주요기능은 지역주민의 건강향상을 위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 모성·영유아·여성·노인·장애인의 건강증진, 만성질환 등의 질병관리, 의료기관 관리 등의 보건 및 행정업무이며, 진료기능은 감기 등 경증질환 진료와 예방접종 등으로 미미하다.

보건소장의 업무 중 진료보다 국민보건사업 수행이 더 중요하므로 보건소장이 반드시 의사이어야 할 필요성이 없으며, 의사 면허가 있는 사람을 보건소장으로 우선 임용하는 것은 보건소에 근무하는 직원들에 대한 승진 기회를 제한하는 차별행위이다.

#### 다. 피진정인

보건소는 지역사회에서 진료를 포함한 건강증진·질병 예방 등의 업무를 총괄하고 있으며, 메르스와 같은 감염병 유행 시에는 보건소가 수행하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 업무의 중요성이 크다. 따라서 보건소 업무를 총괄하는 보건소장은 보건소가 수행하고 있는 보건의료 업무 전반에 대한 종합적 이해도를 갖춘 사람이 수행하는 것이 타당하다.

특정 업무 수행에 상당한 수준의 전문성이 필요하거나 효율적인 정책 수립과 이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업무 수행자의 자격을 특정 자격으로 제한하는 것이 불가피한 점을 고려할 때, 보건소장에 의사 면허가 있는 사람을 우선 임용하도록 하는 현행 법령의 유지가 필요하다.

#### 라. 관계인(대한◇◇협회장)

국민건강증진과 보건소의 제대로 된 기능 정립을 위해 보건소장은 의사 면허가 있는 사람으로만 임명할 수 있도록 오히려 규정을 강화해야 한

다. 국민의 건강권을 지키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하는 보건소장은 폭넓은 전문지식을 가지고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의사가 최적임자이다. 보건소장은 지역주민, 나아가 취약계층의 건강권을 책임지고 관리하는 자이므로 전문성을 기초로 한 자격의 제한은 반드시 필요하다.

### 3. 관련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 4. 인정사실

피진정인이 제출한 자료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지역보건법」 제11조 제1항은 보건소의 기능 및 업무를 ‘건강 친화적인 지역사회 여건의 조성’, ‘지역보건의료정책의 기획, 조사·연구 및 평가’, ‘보건의료인 및 보건의료기관 등에 대한 지도·관리·육성과 국민 보건 향상을 위한 지도·관리’, ‘보건의료 관련기관·단체, 학교, 직장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지역주민의 건강증진 및 질병예방·관리를 위한 지역보건의료서비스의 제공’ 등으로 규정하며, 「지역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1]에서 그 세부적인 예시를 들고 있다.

나.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은 보건소에 보건소장 1명을 두되 의사 면허가 있는 사람 중에서 보건소장을 임용하고, 다만 의사 면허가 있는 사람 중에서 임용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보건·식품위생·의료기술·의무·약무·간호·보건진료 직렬의 공무원을 보건소장으로 임용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다. 2015. 12. 기준 보건소장의 각 직역별 임용현황은 아래 표와 같다

〈보건소장 임용 현황〉

(단위: 명)

총계	의사	보건직 공무원			
		간호사(조산사 포함)	약사	의료기사 등*	기타
252	103	18	2	81	48

\* 의료기사 등: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치과위생사, 영상사, 의무기록사, 간호조무사, 위생사 등

라.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2]는 보건소에는 1~6명의 의사를 두도록 하고 있는데, 2015년의 경우 보건소 1곳당 평균 3.1명의 의사가 배치되어 있고 보건소장을 제외한 인력현황은 아래 표와 같다.

〈보건소장을 제외한 인력 현황〉

(단위: 개소, 명)

보건소	인력합계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기타*
		소계	의무직	계약직	공보의	소계	일반	공보의	소계	일반	공보의	
254	12,909	793	68	261	464	239	53	186	305	54	251	11,572

\* 기타: 간호사, 약사, 의료기사, 영양사, 간호조무사, 행정직 등

## 5. 판단

「헌법」 제11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고용과 관련하여 특정한 사람을 우대·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것을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보건소장의 의사 우선 임용기준에 대한 진정사건(2006. 8. 29. 결정, 05진차387)에서, “보건소장의 직위가 그 직무 수행에 있어서 의사 자격이 필수불가결한 자격요건을 필요로 하거나 공익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조치 내지 특별히 우대하여야 할 이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건소장의 자격을 “의사의 면허를 가진 자 또는 보건 관련 전문지식을 가진 인력 등”으로 개정할 것을 권고하였다. 그러나 보건복지부장관은 위 권고를 수용하지 아니 하였다.

당시 국가인권위원회가 보건소장의 의사 우선 임용에 대해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라고 판단한 주된 이유는, 보건소의 업무가 국민건강증진·보건교육·구강건강 및 영양개선사업, 전염병의 예방·관리 및 진료, 공중위생 및 식품위생, 응급의료에 관한 사항 등 의학뿐만 아니라 보건학 등 다른 분야와 관련된 사항도 있어 건강증진 등과 관련된 보건학적 지식이나 지역보건사업도 간과할 수 없다는 점, 보건소장은 소속 공무원에 대한 지휘·감독, 관할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의 직원 및 업무에 대한 지도·감독을 하여야 하는 등 조직을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이끌고 대외관계적 역할을 수행하고 지

역보건사업을 기획할 수 있는 능력을 실천하는 등의 리더십 역량도 필요한 직위인 점, 「지역보건법 시행규칙」의 전문인력의 최소 배치 기준에 따라 각 보건소에는 보건소장을 제외한 의사를 1~6명 두도록 하여 의료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별도의 전문인력을 두고 있는 점,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방의료원장은 지방의료원의 운영에 관한 전문적인 식견과 능력이 있는 자 중에 임명하고 있어 비의사의 임명도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 점 등이었다.

또한, 인정사실 라.항과 같이 보건소에는 의사, 치과의사, 간호사, 약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치과위생사 등 각 전문분야별로 자격을 갖춘 인력들이 배치되는바, 이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특별히 의사 면허를 가진 자를 보건소장으로 우선 임용하여야 할 필요성이 적다고 판단된다.

피진정인은 메르스와 같은 감염병 유행 시 일선 보건소가 수행하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 업무의 중요성을 재확인하였다고 하나, 이는 예방의학 등의 관련분야 전문의 또는 비의사로서 보건학을 전공하거나 보건사업 종사 경력이 있는 자를 보건소장에 우선 임용할 수 있는 이유가 될 것이며, 단순히 의사 면허가 있는 사람이 보건소장 업무를 수행해야만 하는 근거로 받아들여지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에 대하여, 국가인권위원회가 기존에 불합리한 차별행위라고 결정한 것과 달리 불 이유가 없으므로, 같은 이유로 피진정인에게 주문과 같이 다시 권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7. 2. 24.

위원장 최혜리

위원 한위수

위원 이은경

[별지]

## 관 련 규 정

### 1. 「헌법」

제11조 ①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 2. 「지역보건법」

제11조 (보건소의 기능 및 업무) ① 보건소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에서 다음 각 호의 기능 및 업무를 수행한다.

1. 건강 친화적인 지역사회 여건의 조성
2. 지역보건의료정책의 기획, 조사·연구 및 평가
3. 보건의료인 및 「보건의료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보건의료기관 등에 대한 지도·관리·육성과 국민보건 향상을 위한 지도·관리
4. 보건의료 관련기관·단체, 학교, 직장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5. 지역주민의 건강증진 및 질병예방·관리를 위한 다음 각 목의 지역보건의료서비스의 제공
  - 가. 국민건강증진·구강건강·영양관리사업 및 보건교육
  - 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
  - 다. 모성과 영유아의 건강유지·증진
  - 라. 여성·노인·장애인 등 보건의료 취약계층의 건강유지·증진
  - 마. 정신건강증진 및 생명존중에 관한 사항
  - 바. 지역주민에 대한 진료, 건강검진 및 만성질환 등의 질병관리에 관한 사항

사. 가정 및 사회복지시설 등을 방문하여 행하는 보건의료사업

제16조 (전문인력의 적정 배치 등) ① 지역보건의료기관에는 기관의 장과 해당 기관의 기능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면허·자격 또는 전문지식을 가진 인력(이하 “전문인력”이라 한다)을 두어야 한다.

### 3.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9조(보건소의 기능 및 업무의 세부 사항) ① 법 제11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지역보건의료정책의 기획, 조사·연구 및 평가의 세부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보건의료계획 등 보건의료 및 건강증진에 관한 중장기 계획 및 실행계획의 수립·시행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지역사회 건강실태조사 등 보건의료 및 건강증진에 관한 조사·연구에 관한 사항
  3. 보건에 관한 실험 또는 검사에 관한 사항
- ② 법 제11조제1항제3호에 따른 보건의료인 및 「보건의료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보건의료기관 등에 대한 지도·관리·육성과 국민보건 향상을 위한 지도·관리의 세부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의료인 및 의료기관에 대한 지도 등에 관한 사항
  2. 의료기사·의무기록사 및 안경사에 대한 지도 등에 관한 사항
  3. 응급의료에 관한 사항
  4.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공중보건 의사, 보건진료 전담공무원 및 보건진료소에 대한 지도 등에 관한 사항
  5. 약사에 관한 사항과 마약·향정신성의약품의 관리에 관한 사항

6. 공중위생 및 식품위생에 관한 사항

제13조(보건소장) ① 보건소에 보건소장(보건의료원의 경우에는 원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1명을 두되, 의사 면허가 있는 사람 중에서 보건소장을 임용한다. 다만, 의사 면허가 있는 사람 중에서 임용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지방공무원 임용령」 별표 1에 따른 보건·식품위생·의료기술·의무·약무·간호·보건진료(이하 “보건등“이라 한다) 직렬의 공무원을 보건소장으로 임용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보건등 직렬의 공무원을 보건소장으로 임용하려는 경우에 해당 보건소에서 실제로 보건등과 관련된 업무를 하는 보건등 직렬의 공무원으로서 보건소장으로 임용되기 이전 최근 5년 이상 보건등의 업무와 관련하여 근무한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임용하여야 한다.

③ 보건소장은 시장·군수·구청장의 지휘·감독을 받아 보건소의 업무를 관장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하며, 관할 보건지소, 건강생활지원센터 및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보건진료소(이하 “보건진료소“라 한다)의 직원 및 업무에 대하여 지도·감독한다.

제16조(전문인력의 배치 기준) 법 제16조 제1항에 따라 지역보건의료기관에 두어야 하는 전문인력(이하 “전문인력“이라 한다)의 면허 또는 자격의 종류에 따른 최소 배치 기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4. 「지역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1]

보건소에서 수행할 수 있는 기능 및 업무의 예시

기능	업무	예시
1. 보건의료인 및 「보건의료기본법」 제3조 제4호에 따른 보건의료기관 등에 대한 지도·관리·육성과 국민보건 향상을 위한 지도·관리	가. 의료인 및 의료기관에 대한 지도 등에 관한 사항	1) 의료기관의 개설 및 지도에 관한 사항 가) 의원·치과의원·한의원 및 조산원의 개설신고 수리 나) 부속의료기관의 개설신고 수리 다) 의료기관의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및 특수의료장비의 설치·운영 신고 수리 라) 의료기관의 폐업·휴업 신고 수리 및 진료기록부 등의 이관·보관 등에 관한 사항 마) 의료기관에서 나오는 세탁물 처리업자에 대한 신고 수리 바) 「의료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중앙회의 지부 또는 분회 설치에 대한 신고 수리 2) 의료에 관한 지도·감독 및 행정 처분 가) 의료기관의 업무개시 명령 나)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에 대한 보고 명령 다) 업무상황·시설 또는 진료기록부·간호기록부 등의 검사 라) 의료시설·장비사용의 제한 또는 금지 처분 마) 의료기관에 대한 업무정지·허가취소·폐쇄 처분 및 과징금 부과 등 바) 의료지도원의 임명
	나. 의료기사·의무기록사 및 안경사에 대한 지도 등에 관한 사항	1) 치과기공소 및 안경업소의 개설 등록 2) 치과기공소 및 안경업소의 폐업·등록사항 변경 신고 수리 3) 치과기공소 및 안경업소의 개설자에 대한 시정명령 4) 치과기공소 및 안경업소의 영업정지 및 등록취소 등
	다. 응급의료에 관한 사항	1) 환자가 여러 명 발생한 경우 응급의료 및 응급환자 이송 등의 업무에 대한 중사 명령 2) 지역응급의료기관 지정 및 지정취소 3) 당직의료기관 지정 4) 응급의료기관 외의 의료기관 내 응급의료시설 설치·운영신고 수리 5) 구급차 등의 운용자에 대한 운용정지 및 말소등록 요청 6) 구급차 등의 운용상황과 실태점검·시정·정지 명령
	라.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공중보건의사·보건진료 전담공무원 및	1) 공중보건의사의 시·군·구안의 근무지역·근무기관·근무시설 변경 및 변경 결과 보고 2) 공중보건의사의 시·군·구 파견근무 명령 3) 공중보건의사에 대한 근무지역의 이탈금지 명령 4) 공중보건의사의 복무에 관한 지도·감독 5) 보건진료소의 설치·운영 6)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의 근무지역 지정·임용 및 정계

기능	업무	예시
	보건진료소에 대한 지도 등에 관한 사항	7)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의 관할구역 이탈금지 명령 8) 보건진료소의 업무에 대한 지도·감독
	마. 약사에 관한 사항과 마약·향정신성의약품의 관리에 관한 사항	1) 약국 및 의약품 관리 가) 약국 개설등록 수리 나) 약국 폐업 또는 휴업, 휴업한 약국의 재개 신고 수리 다) 약국제제 또는 조제실제제의 제조 품목 신고 수리 라)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등록 수리 마) 한약업사 및 의약품 도매상 허가 바) 약국 또는 점포 외 장소 의약품 판매 승인 사) 약국개설자, 의약품 판매업자에 대한 보고명령·시설과 서류의 검사 및 의약품의 수거 아) 약국개설자, 의약품 판매업자의 의약품 생산, 업무 개시 명령 자) 약국개설자, 의약품 판매업자의 의약품 회수·폐기 또는 조치 명령 차) 약국개설자, 의약품 판매업자의 시설 개수 명령 또는 사용 금지 명령 카) 약국개설자의 관리자 변경 명령 타) 약국개설자, 의약품 판매업자의 허가·승인·등록 취소 파)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등록 취소 하) 약사감시원 임명 2) 마약류 취급자 및 마약류 관리 가) 대마 취급자의 허가 및 허가증 교부 나) 대마 재배 면적, 생산 현황 및 수량 보고, 폐기 보고 수리 다) 마약류도매업자, 마약류소매업자, 마약류취급의료업자, 마약류관리자, 대마 재배자의 마약류 취급 감시 및 단속 라) 마약류도매업자, 마약류소매업자, 마약류취급의료업자, 마약류관리자, 대마 재배자의 마약류 폐기 및 조치 명령 마) 마약류도매업자, 마약류소매업자, 마약류취급의료업자, 마약류관리자, 대마 재배자에 대한 관리 및 업무 보고 명령 바) 마약류 감시원 및 마약류 명예지도원 운영
	바. 공중위생 및 식품위생에 관한 사항	1) 공중위생영업자 및 해당 시설에 대한 지도·관리 가) 공중위생영업·폐업·승계에 대한 신고 수리 나) 이용사 및 미용사의 면허 등 교부·취소 등

기능	업무	예시
		다) 공중위생영업자 및 공중이용시설의 소유자 등에 대한 보고관리 및 출입·검사 라) 공중위생영업자 및 공중위생시설의 소유자 등에 대한 위생지도 및 개선명령 마) 위생관리등급 공표 등 바) 공중위생감시원 임명 등 2) 식품접객업소 등에 관한 지도·관리 가) 위해평가 결과 등에 관한 보고 등 나) 식품위생 영업소 등에 대한 출입·검사·수거 등의 조치 다) 식품 등의 검사·재검사 수행 및 검사결과 등의 통보 라) 식품위생감시원 임명 및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 위촉 마) 식품위생 영업의 허가 및 영업 승계 등에 대한 신고 수리 바) 위해식품 및 식품 등의 이물 등에 대한 신고 수리 및 회수조치·보고·품목 제조정지 등 사) 식품 등의 제조·가공업소, 식품접객업소 또는 집단급식소에 대한 위생등급 관리 및 모범업소 지정 등 아) 조리사의 면허 교부 및 취소 등 자) 식품위생업소 등에 대한 시정명령 및 위해식품에 대한 폐기처분 등 차) 위해식품 등의 공표에 관한 사항 카) 식품위생 영업시설 개수명령 등 타) 식품위생 영업의 허가취소 및 식품위생영업소 등의 폐쇄조치 파) 집단급식소 설치·운영에 대한 신고 수리 하)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 관리 거)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 지정 너) 어린이 기호식품에 대한 안전과 영양공급 등에 대한 교육 및 홍보 더)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 또는 진열·판매하는 자에 대한 시정명령
	2. 지역주민의 건강증진 및 질병예방·관리를 위한 지역보건의료서비스의 제공	가. 국민건강증진·구강건강·영양관리사업 및 보건교육 1) 국민건강증진 가) 건강증진프로그램의 개발 및 실시 나) 주민건강의 증진에 관한 세부계획의 수립 및 시행 다) 담배자판기 설치 단속 등 금연을 위한 조치 라) 금연구역 관리 마) 질병의 조기발견을 위한 검진 등 2) 구강보건 가) 구강건강에 관한 교육사업

기능	업무	예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나) 수돗물에 대한 불소화사업</li> <li>다) 충치예방을 위한 치아홈메우기 사업</li> <li>라) 불소용액 양치사업</li> <li>3) 영양관리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가) 영유아·임산부·수유부·노인·환자 및 성인 등의 영양관리사업</li> <li>나) 영양 및 식생활 교육·홍보</li> <li>다) 집단급식시설에 대한 현황 파악 및 급식업무 지도</li> <li>라) 그 밖에 영양과 식생활개선에 관한 사항</li> </ul> </li> <li>4) 개인 또는 집단에 대한 보건교육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가) 금연·절주·신체활동 등 건강증진에 관한 사항</li> <li>나) 구강건강에 관한 사항</li> <li>다) 영양 및 식생활에 관한 사항</li> <li>라) 만성질환 등 질병의 예방에 관한 사항</li> <li>마) 공중위생 및 식품위생에 관한 사항 등</li> </ul> </li> </ul>
	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감염병의 예방·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가) 감염병 예방을 위한 교육·홍보</li> <li>나) 감염병의 신고 수리·보고</li> <li>다) 관할구역에 거주하는 감염병 환자 또는 의사 환자에 관한 환자 명부의 작성·관리 및 상황 보고</li> <li>라) 디프테리아·폴리오·백일해·홍역·파상풍·결핵·B형간염 등 기타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감염병에 관한 정기·임시 예방접종 실시</li> <li>마) 예방접종의 공고 및 완료 여부의 확인</li> <li>바) 예방접종 기록의 보존 및 보고</li> <li>사) 예방접종 증명서의 교부</li> </ul> </li> <li>아) 감염병관리기관의 지정·관리, 감염병 위기 시 감염병 관리기관의 설치</li> <li>자) 감염병 환자 등의 파악·관리 및 입원통지</li> <li>차) 감염병 유행에 대한 방역 조치 및 감염병 예방을 위한 소독 등</li> <li>카) 소독업 개시·휴업·대행에 대한 신고 접수 및 시정명령·영업정지 등</li> <li>타) 예방위원의 임명 또는 위촉</li> <li>2) 후천성면역결핍증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가) 후천성면역결핍증의 진단·검안사실 및 감염인 사망 등에 대한 신고 수리·보고</li> <li>나) 후천성면역결핍증에 관한 정기 또는 수시검진</li> <li>다) 후천성면역결핍증에 관한 역학조사</li> <li>라) 감염인의 전문진료기관 또는 요양시설의 치료 및 요양 권고</li> <li>마) 후천성면역결핍증검사확인서 발급</li> </ul> </li> </ul>

기능	업무	예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바) 감염자관리명부 작성 및 관리</li> <li>3) 결핵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가) 결핵환자 진단·사망 및 사체 검안에 관한 신고 수리</li> <li>나) 신고된 결핵환자에 대한 검진 및 잠복결핵감염자에 대한 치료 등의 조치</li> <li>다) 결핵 집단발생이 의심되는 경우 역학조사·검진·치료 등의 조치</li> <li>라) 결핵조기발견을 위한 결핵검진</li> <li>마) 신생아 등에 대한 결핵예방접종 실시</li> <li>바) 전염성결핵환자에 대한 접촉업 등의 업무종사 정지·금지 명령 및 전염성소실 시 정지·금지 명령 취소</li> <li>사) 결핵환자에 대한 입원명령</li> <li>아) 전염성결핵환자 접촉자에 대한 결핵검진 및 관리</li> </ul> </li> </ul>
	다. 모성과 영유아의 건강유지·증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임산부의 신고 접수 및 보고</li> <li>2) 모자보건수첩의 발급</li> <li>3) 미숙아 등에 대한 등록카드 작성·관리</li> <li>4) 임산부·영유아·미숙아 등의 건강관리 등</li> <li>5) 피임약제 등의 보급</li> <li>6) 산후조리업의 개설·승계·폐업·휴업 및 재개에 대한 신고 접수</li> <li>7) 산후조리원의 보고·출입·검사 및 시정명령, 폐쇄 등 행정조치 등</li> </ul>
	라. 여성·노인·장애인의 건강유지·증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노인에 대한 건강진단·상담 및 보건교육</li> <li>2)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방문요양서비스 등의 서비스와 안전 확인 등의 보호조치</li> <li>3) 치매검진 및 치매관리사업</li> <li>4) 치매상담센터 설치 및 운영</li> <li>5) 장애인의 검진·재활상담 및 재활서비스 등</li> </ul>
	마. 정신건강증진 및 생명존중에 관한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정신건강증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가) 정신질환자의 발견·상담·진료 및 만성 정신질환자의 관리</li> <li>나) 정신보건센터 설치</li> <li>다) 사회복지시설의 설치·운영</li> <li>라) 사회복지시설의 폐지·휴지·재개신고 수리</li> <li>마) 사회복지시설 폐쇄 또는 정지 명령</li> <li>바) 정신질환자의 입원·퇴원 및 통지 등에 관한 사항</li> <li>사) 정신의료기관 입원환자의 퇴원 또는 처우개선 청구 수리, 기초정신보건심의위원회 회부 및 퇴원 또는 처우개선 조치 명령</li> </ul> </li> <li>2) 생명존중에 관한 사항</li> </ul>



기능	업무	예시
		가) 자살예방센터 및 자살예방용 긴급전화의 설치·운영 나) 자살위험자 조기 발견, 상담 및 치료 등 지원에 관한 사항 다) 자살예방 상담·교육·홍보 등에 관한 사항
	바. 지역주민에 대한 진료, 건강검진 및 만성질환 등의 질병관리에 관한 사항	1) 일반진료 2) 치과진료 3) 한방진료 4) 만성질환 예방 및 관리 프로그램 개발·운영 5)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 6) 암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

[별표 2]

전문인력의 면허 또는 자격의 종류에 따른 최소 배치 기준

1. 보건소 (단위: 명)

직종별	구분	광역시의 구, 인구 50만명 이상인 시의 구 및 인구 30만명 이상인 시	인구 30만명 미만인 시	도농복합형태의 시	군	보건의료원이 설치된 군
	특별시의 구					
의사	3	3	2	2	1	6
치과의사	1	1	1	1	1	1
한의사	1	1	1	1	1	1
조산사	(1)	(1)	(1)	(1)	(1)	(1)
간호사	18	14	10	14	10	23
약사	3	2	1	1	1	2
임상병리사	4	4	3	4	2	4
방사선사	2	2	2	2	2	3
물리치료사	1	1	1	1	1	2
치과위생사	1	1	1	1	1	1
영양사	1	1	1	1	1	2
간호조무사	(2)	(2)	(2)	(2)	(2)	(6)
의무기록사	-	-	-	-	-	1
위생사	(3)	(3)	(2)	(2)	(2)	(2)
정신보건전문요원	1	1	1	1	1	1
정보처리기사 및	(1)	(1)	(1)	(1)	(1)	(1)

정보처리기능사						
응급구조사	-	-	-	-	(1)	1

※비고

- 이 기준은 보건소장을 제외한 기준이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실정에 따라 이 기준을 초과하여 필요한 전문인력을 배치할 수 있다.
-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기준은 공중보건직을 포함한다.
- 조산사 및 간호조무사는 간호사 전체 인력의 범위에서 간호사에 갈음하여 배치할 수 있다.
- 위생사의 기준은 보건소에서 위생 업무를 관장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 정보처리기사·정보처리기능사 및 응급구조사의 기준 중 ( )로 표시된 기준은 해당 시·군·구의 여건에 따라 이 기준을 조정하여 배치할 수 있다.
- 영양사는 인구 5만명 미만의 군(보건의료원이 설치된 군은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해당 군의 여건에 따라 이 기준을 조정하여 배치할 수 있다.

2. 보건지소 (단위: 명)

구분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	치과위생사
보건지소	1	1	1	3	1
통합 보건지소	1 × 관할 읍·면수	1 × 관할 읍·면수	1 × 관할 읍·면수	3 × 관할 읍·면수	1 × 관할 읍·면수

※비고

- 치과의사 및 한의사는 공중보건직으로서의 치과의사 및 한의사의 인력 사정에 따라 이 기준을 조정하여 배치할 수 있다.
- 치과위생사는 치과의사의 배치를 고려하여 이 기준을 조정하여 배치할 수 있다.

3. 건강생활지원센터 (단위: 명)

구분	의사 또는 한의사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	물리치료사 또는 체육지도자	영양사
건강생활지원센터	1	3	1	1

※비고

- 의사 또는 한의사는 축탁 등 비상근으로 배치할 수 있다.
- 건강생활지원센터 사업 규모, 사업 내용 등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여건에 맞게 기준을 조정하여 배치할 수 있다.